大田廣域市青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

1. 提案事由

○ 靑少年自立事業支援基金의 效率的인 增殖效果를 위하여 高率의 金融商品으로 預置토록 明文規定하고.

○ 獎學生으로 選拔・決定된 者에 대하여는 學士管理를 總括하 는 大田廣域市 教育監에게 그 名單을 通報토록 함으로써

二重受惠防止등 基金의 效率的인 管理를 기하도록 하고자함.

2. 主要骨子

- ㅇ 基金은 別途의 計座로 管理토록 함 (案 第7條 第1項)
- ㅇ 基金은 高率의 金融商品으로 預置토록 함 (案 第7條 第2項)
- 獎學生으로 選拔된 者는 大田廣域市 教育監에게 그 名單을 通報토록 함 (案 第9條)

대전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 (청소년 자립기금)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 제2항의 내용중 "이자율이 높은예금"을 "고율의 금융상품"으로 한다.

제9조 제2항의 내용중 "이를" 다음에 "대전광역시 교육감과"를 삽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 (기금관리) ① 기금은 세입세출외	제7조 (기금관리) ① 별도의 계좌
현금(청소년 자립기금)구좌로 관리하여	(청소년자립기금)로
하여야 한다.	
② 기금은 은행법, 농업협동조합법,	②
단기 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	
또는 채신관서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	고율의 금융상품
으로 예탁한다.	
제9조 (대상자추천 및 선발) ①(생 략)	제9조(대상자추천 및 선발) ①(현행과 같음
②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청소년	@
은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	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
프 를 구청장에게 통보한다.	이물 대전광역시 교육감과
_	
	,
•	,
v	
-	
	Đ
	e